

2026년도 제1회 강원북부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강원북부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고
강원북부교도소	복지과 (직원식당)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1명	

2. 담당예정 직무

○ 음식 재료관리 및 조리

○ 직원식당 위생 및 환경관리 등

※ 참고사항 : 교도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조리하며 수용자와는 관련이 없음

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4.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직근로자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 60세)

○ 근무시간

- 원칙: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
- 1조 06:00 ~ 15:00, 2조 09:00 ~ 18:00
-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순번에 따라 근무
- 근무시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근무조건 :

- 기본급(2026년 기준) : 2,155,880원(세 전)
- 정액급식비(2026년 기준) : 월 160,000원
- 상여금(2026년 기준) : 1,293,530원(연 2회 지급, 기본급 60%) 지급
- 맞춤형 복지비(2026년 기준) : 연 500,000원 지급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근무장소 : 강원북부교도소 구내 직원식당(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단, 근무지(강원북부교도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우대사항

가. 조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직무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우대사항 적용기준일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함

7.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산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산사항은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함

☞ 가산사항이 중복 해당 시 상위 점수 1개만 적용함

8.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6. 6. 12.(금) ~ 6. 22.(월)	'26. 6. 16.(화) ~ 6. 22.(월)	'26. 6. 26.(금) '26. 6. 30.(화)	'26. 7. 3.(금)	'26. 7. 7.(화)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방법

단위:조리원(조리원)

○ 적극적 서류전형(응시인원 6명 이상인 경우)

계	평정요소				
	일반 전형요소(60%)		전문분야 전형요소(40%)		가산요소(3%)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분야경력	우대사항자격증	사회형평가점
100점 (+가점)	30	30	30	10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인원 5명 이하인 경우)

적격여부만 판단, 응시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의 경우 및 제출서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탈락 처리

○ 면접전형 방법

공무직근로자(조리원)	○ 면접방법: 개별면접				
	-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방식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위원들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근로자(조리원)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유 :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9.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026. 6. 12.(금) ~ 6. 22.(월)	나라일터·법무부홈페이지 등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6. 6. 16.(화) ~ 6. 22.(월)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서류전형 (1차)	2026. 6. 26.(금)	강원북부교도소 청사 2층 회의실
서류전형결과발표	2026. 6. 30.(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개별통보 병행)
면접전형 (2차)	2026. 7. 3.(금)	강원북부교도소 청사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7.(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개별통보 병행)
합격자 등록 등	2026. 7. 7.(화) ~ 7. 9.(목)	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임용	2026년도 7월중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10.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의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6. 16.(화) ~ 6. 22.(월)

○ 응시원서 접수처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4511번길 13	033) 634-7204	인사담당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대리 접수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편지봉투에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응시원서 재중” 으로 표기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목록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조리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연·월)·직위(급)·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포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조리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10.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1. 가산요건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12. 주민등록등본·초본(상세) 각 1부	○ 상세발급, 초본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구 분	내 용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공통 필수
14.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공통 필수

-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 제출서류 사본 제출 가능
-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11.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응시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강원북부교도소 복지과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본인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증명서류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6. 7. 7. ~ 2026. 8. 7.**
-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채용신체검사,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033-634-7204) 인사담당자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접수담당기재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핸드폰 번호

■ 제출서류(총괄표)

목 록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필수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미제출
	2	응시원서 1부	☐ 제출 ☐ 미제출
	3	이력서 1부	☐ 제출 ☐ 미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 제출 ☐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6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등본·초본(상제) 각 1부(남성 병역사항 포함)	☐ 제출 ☐ 미제출
	9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0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제출 ☐ 미제출
우대 및 가산요건 해당자 제출서류	11	조리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12	4대 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3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14	가산요건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 제출한 서류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란에 “✓” 표시

※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본인은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강원북부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도 제1회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무원직근로자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강원북부교도소장 (인)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조리원’ 으로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이 력 서

가. 공통요건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기관	강원북부 교도소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洞)
주소					연락처		

나. 응시자격			
응시 요 건	결격사유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응시 연 령	복수국적
	☐ 예 ☐ 아니오	☐ 18세이하 ☐ 18세이상	☐ 예 ☐ 아니오

다. 우대사항				
근 무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0000년00월~0000년00월 (00년 00월)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한식조리기능사	0000년00월00일		

라. 가산사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시(군)청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응시자격

- ① 각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
- ☐ 예 ☐ 아니오

◎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① 우대사항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최근 경력부터 기재
 -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고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작성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 ②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의 추가사항 작성 필요시 2장으로 이어서 작성 가능
- ③ 가산요건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 세부내용에 가산비율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 발행기관 : 해당 지자체 등 증빙할 수 있는 기관 기재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글자색은 검정색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예시) 00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및 직장생활을 하던 중 결혼을 한 후 육아 등 가사에 집중하였으나, 한 번쯤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격이고, 평소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하여 친화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	------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제6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제1회 공무원근로자(조리원)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강원북부교도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강원북부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절차 진행 완료후 5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수집항목	복수국적·임용결격사유·범죄경력·비위면직 조회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절차 진행 완료후 5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절차 진행 완료후 5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과 관련, 범죄경력 등의 자료가 공개됨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강원북부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북부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9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공무직 등 관리지침」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강원북부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